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변경〉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8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변경	2
참고자료 1. 지역별 인구 및 사건 수(1심) 비교	6
참고자료 2. 해외 최고법원 소재지 사례	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6. 26.

나.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또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III. 검토의견

1.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변경 (안 제5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u>서울특별시</u> 에 둔다.	제12조(소재지) ----- <u>대구광역시</u> 에-----.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의 과밀화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법기관과 정치·권력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일정한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이나 권력분립의 원칙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임.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의 명칭이나 지위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는데, 광복 후 미군정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검사를 임명하는 임명사령에 ‘Supreme Court’를 ‘대법원’으로 번역하여 관보에 게재한 이래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명칭은 대법원이 되었음¹⁾.
- 1949년 9월 26일 제정된 「법원조직법」 제14조²⁾ 전단에서는 ‘대법원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7년 12월 4일 전부개정된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였고, 해당 규정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참고로, 일제강점기 경성복심법원 및 경성지방법원으로 사용되었던

1)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대법원>>대법원소개>>대법원 역사, 2024. 8. 7. 최종확인

2) 「법원조직법」 제14조 대법원은 수도에 둔다. 국가비상시에 제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다른 지역에 이치할수 있다.

서소문 청사(서울 중구)가 1948년 이후부터는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는 현 서초 청사가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하며,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면서도,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호주 등 많은 경우 최고법원의 소재지가 수도인 것으로 나타나나,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이 최고법원의 소재지가 수도가 아닌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제적 성격이 강한 국가들이며,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최고법원의 유형 자체가 다양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2. 해외 최고법원 소재지 사례 참조).

- 대법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 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하는 것은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 사건관계인들의 사법접근성과 오랜 기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사법시스템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편익이 비용과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지역별 인구 및 사건 수(1심) 비교

지역		인구 수		본안사건 수(제1심)	
		인구 수	비율(%)	건수	비율(%)
합 계		51,439,038	100	1,028,051	100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2,062,591	4	236,071	23
	서울동부지방법원 관내	1,737,284	3.4	42,063	4.1
	서울남부지방법원 관내	2,010,679	3.9	64,991	6.3
	서울북부지방법원 관내	2,261,447	4.4	30,36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관내	1,356,371	2.6	29,736	2.9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3,589,775	7	48,129	4.7
	인천지방법원 관내	4,241,709	8.3	70,191	6.8
	춘천지방법원 관내	1,494,242	2.9	20,486	2
	소계	18,754,098	36.5	542,035	52.7
수원	수원지방법원 관내	8,767,518	17	124,054	12.1
대전	대전지방법원 관내	3,952,700	7.7	56,358	5.5
	청주지방법원 관내	1,595,058	3.1	21,075	2
대구	대구지방법원 관내	4,964,183	9.7	70,981	6.9
부산	부산지방법원 관내	3,317,812	6.5	61,627	6
	울산지방법원 관내	1,464,455	2.8	21,000	2
	창원지방법원 관내	2,926,701	5.7	42,097	4.1
광주	광주지방법원 관내	3,248,747	6.3	50,157	4.9
	전주지방법원 관내	1,769,607	3.4	25,676	2.5
	제주지방법원 관내	678,159	1.3	12,991	1.3

- 주 1. 인구 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법원 관내지역 인구 수
 2.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사건 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수를 합산 기재
 3. 특허법원 사건 872건은 제외

자료: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p. 707

참고자료 2

해외 최고법원 소재지 사례

국가	최고법원명	소재지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워싱턴 D.C.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	런던(London)
독일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 BGH)	칼스루에(Karlsruhe)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BVerwG)	라이프치히(Leipzig)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BAG)	에르푸르트(Erfurt)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BSG)	카셀(Kassel)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BFH)	뮌헨(Munich)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칼스루에(Karlsruhe)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 der Nederlanden)	헤이그(Hague)
	중앙항소법원(Centrale Raad van Beroep)	위트레흐트(Utrecht)
	통상산업 항소법원(College van Beroep van het bedrijfsleven)	헤이그(Hague)
	국사원 행정관할부(De Raad van State)	헤이그(Hague)
스위스	연방대법원(Federal Supreme Court of Switzerland)	로잔(Lausanne)
프랑스	일반법원 최고법원(Cour de cassation)	파리(Paris)
	행정법원 최고법원(Conseil d'Etat)	파리(Paris)
	헌법의회(Conseil constitutionnel)	파리(Paris)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	마드리드(Madrid)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	마드리드(Madrid)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도쿄
중국	최고인민법원	베이징
말레이시아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Malaysia)	푸트라자야(Putrajaya)
호주	연방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	캔버라(Canberra)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Appeal of South Africa)	블룸폰테인(Bloemfontein)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Africa)	블룸폰테인(Bloemfontein)

※ 위 사례 중 최고법원 소재지가 수도가 아닌 국가: 독일(수도: 베를린), 네덜란드(수도: 암스테르담), 스위스(수도: 베른), 말레이시아(수도: 쿠알라룸푸르), 남아프리카공화국(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

자료: 사법정책연구원, 「각국의 사법제도」, 2020. 12.
 사법정책연구원,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 10.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https://ri.court.go.kr/>)>>연구활동>>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세계헌법재판기관, 2024. 7. 2. 최종 확인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해외사례>>국가별 주요 도시 기능 사례, 2024. 7. 2. 최종 확인